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안)

의안 번호	96-17
----------	-------

제출년월일 : '96. 5.
제 출 자 : 달서구청장
(세무과장)

1. 제안이유

- 달서구세감면조례중 운영상 미비점등 보완.

2. 근거법령

- 지방세법제7조 제2항

3. 주요골자

- 감면범위 명료화 및 축소
 - 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용공동주택중 당해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한하여 재산세액의 50% 경감,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3:1,000으로함(안 제12조 제1항)
 - 전용면적 40㎡이하의 영구임대공동주택중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입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총당하는 복리시설에 한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함(안 제12조 제2항)
- 중복감면배제(안 제16조)
 - 동일한 과세대상에 2이상의 지방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 29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중 감면율이 높은것 하나만 적용함.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안)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를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과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한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현행	개정 (안)
<p>동산을 준공한 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p>	<p>.....</p>
<p>②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과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 시설(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한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부속토지(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p>
<p><신 설></p>	<p>제16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p>
<p>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7조 현행 제16조와 같음.</p>